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강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84 발의연월일: 2025. 3. 13.

발 의 자:이강일·김남근·김남희

김우영 · 김태선 · 김현정

민병덕 • 박주민 • 염태영

이용우 • 이재관 • 정준호

황운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이 법을 위반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 여하고,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음.

그런데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이 노동관련 사항을 조사하던 중 외국인 근로자의 위법한 체류를 알게 된 경우는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.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등 노동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강제퇴거 통보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.

이에 대통령령에 규정된 면제사유들을 법률로 규정하고,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의 조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강제퇴거

대상자를 발견한 경우를 통보의무 면제사유에 추가하여 체류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임(안 제84조제1항, 제2항 및 제86 조제2항). 법률 제 호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
- 2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 보를 알게 된 경우
- 3.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 각 호의 보호조치 또는 같은 법 제2 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 정보를 알게 된 경우
- 4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에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・긴급구조・자활・의료지원 등의 업무를

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

- 5. 「근로기준법」 제102조 및 제102조의2에 따라 근로 조건 등 노 동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 근로자 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
- 6.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,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86조제2항 중 "제84조제2항에"를 "제84조제3항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개정된 근로기준법(법률 제20520호)이 시행되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84조(통보의무) ① ----제84조(통보의무) ①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 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 •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---. <단서 삭제> 한다. 다만,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 설>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・중

- 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 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 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 게 된 경우
- 2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 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 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 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
- 3.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

 각 호의 보호조치 또는 같은
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
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
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
 경우
- 4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 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 지센터에서 청소년에 대한 상 담・긴급구조・자활・의료지 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 보를 알게 된 경우
- 5. 「근로기준법」 제102조 및제102조의2에 따라 근로 조건등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사항

<u>②</u> (생 략) 제86조(신병의 인도) ① (생 략)

② 교도소·소년교도소·구치소 및 그 지소·보호감호소· 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방 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 퇴거명령서가 발급되면 석방· 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 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 여야 한다. 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

- 6.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 자 구조,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제86조(신병의 인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
<u>제84조제3항에</u>